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사하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 4 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 5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3 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6 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

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 7 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8 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직할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 9 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 4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10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 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 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

제한다.

제12조(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 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 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5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7조(부산직할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8조(부산직할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별 표〉

상 이 등 급 분 류 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 급 (복 합 호수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별지 서식〉

부산직할시 사하구세 감면신청서				처리기한	
				7 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합계				
감면사유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 제 조			
부산직할시사하구세감면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사 하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